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522
----------	------

발의연월일 : 2020. 10. 14.

발 의 자 : 임이자 · 윤영석 · 권명호
이종성 · 송언석 · 정진석
김정재 · 서일준 · 김영식
구자근 · 金炳旭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물질이 섞인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을 불법으로 수출하는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환경부는 보세구역 등에서 수출입하려는 폐기물 컨테이너의 개장 검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컨테이너 개장검사를 위해 보세구역 등에서 검사 대상 컨테이너를 검사 장소로 운반하거나 개장하는 비용 등을 국가가 전액 부담함으로써 국가재정이 낭비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폐기물을 수출입하려는 자가 통관 전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되, 검사 결과 위법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검사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 법령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22조제4항 신설 등).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7179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제5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해성이 크지 않고, 불법수출입으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가 적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 수출입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보세구역 등에서 검사 대상 물품의 채취·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은 화주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컨테이너 화물로서 해당 화물에 대한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대외무역법」 등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물품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검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법률 제17179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p> <p>제5조의2(폐기물 수출입자의 자 격) ①·② (생략)</p> <p><u><신설></u></p>	<p>법률 제17179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p> <p>제5조의2(폐기물 수출입자의 자 격) ①·② (현행과 같음)</p> <p><u>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 위해성이 크지 않고, 불법수 출입으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가 적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 이 수출입자의 자격에 관한 사 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 다.</u></p>
<p>제22조(보고·검사 등) ① ~ ③ (생략)</p> <p><u><신설></u></p>	<p>제22조(보고·검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u>④ 제1항에 따라 보세구역 등에 서 검사 대상 물품의 채취·운 반 등에 필요한 비용은 화주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는 「중소 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 소기업의 컨테이너 화물로서 해 당 화물에 대한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대외무역법」 등 물 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u></p>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물품
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검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
다.